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역할과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산업구조는 비교적 동일한 재화를 대량 생산하는 방식 위주의 산업화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 변화에 따라 금융의 자금조달, 위험보장 및 금융상품 자체로서의 부가 가치 창출 등 금융·보험의 역할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 감소에 대응한 노후 소득원의 확보 역시 우리사회가 금융·보험업을 통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시대에는 평균수명은 늘어났으나 개인이 은퇴연령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창출하기는 어려우므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금융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렇듯 금융·보험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투자자가 금융·보험상품 및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금융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투자자 개개인 그리고 국가의 사회후생 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회,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는 저성장·저금리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금융투자자의 금융·보험상품 투자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예·적금 위주의 투자가 금융투자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혹은 위험보장 및 장기투자가 가능한 보험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금융·보험세제는 금융투자자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예를 들어, 금리 2% 수준의 예금상품과 비교했을 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예: 소장펀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익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세제¹⁾는 투자의 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금융의 가장 큰 역할은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금융 및 실물시장 참여자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투자자의 자금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급하여 투자자와 생산자 모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금융의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편익 측면에서, 국민이 합리적인 보험·금융 투자를 통해 생애동안 필요한 위험보장, 자금 운용 및 자산형성을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금융·보험상품에 쉽게 접근하여 사회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직관적이고 상식과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금융업권 및 상품의 특징 및 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세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은행 및 금융투자업은 단기저축 및 금융투자를 통한 재산형성 및 단기자본 조달의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으며 보험의 경우 위험보장 및 장기저축 그리고 장기자본조달의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이러한 금융업권 간 특성 역시 금융세제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본 보고서는 금융·보험업에 관한 대표적 상품들의 과세세제 특징을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의 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금융·보험세제의 특징과 방향성을 논의하여 금융·보험세제의 나아갈 바를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 및 보험세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금융, 보험, 연금 등의 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기가 어려우며 각각의 분야를 연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금융투자 및 집합투자기구 과세와 관련한 연구는 홍범교·이상엽(2012, 2014)이 자본이득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현재 과세체제의 문제점보다는 과세논리상의 과세가능성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김용민(2010)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 특징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이 역시 과세이론상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1) 본고에서 세제(稅制)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전반을 의미하며, 세제혜택(稅制惠澤)은 세제를 통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편, 문성훈(2010)은 펀드와 직접투자가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를 과세체계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체계의 해결책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오윤·문성훈(2015), 홍범교·김진수(2010) 등이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본이득세 도입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펀드과세 등에 대한 확대된 논의는 전개하지 않았다. 보험세제의 경우 신보미(2013)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관련 법 간의 유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신보미의 연구는 저축성보험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연금세제에 있어서 정원석·강성호(2015a), 문성훈·김수성(2015)은 연금의 납입 시 세액공제로 세제혜택변화가 경제주체의 연금가입유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들은 세액공제로 변화가 중산층의 연금가입유인이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에는 특별한 연금가입유인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 역시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납입 시 세제만을 분석한 부분적인 분석에 그쳐 연금세제 전반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금융·보험세제에서 일반적인 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보험 그리고 연금의 전반적인 과세 방식 및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데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세제에 관해서는 손실 발생 시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재 집합투자기구과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 그리고 투자지역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또한, 보험세제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세제와 해외 보험세제를 조사 및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유사연구와 차별화를 기하였다. 연금세제 역시 우리나라 연금세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연금세제가 중산층·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조사한 금융선진국은 유럽금융의 중심지로서 자본시장, 보험 및 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그에 대한 긴 과세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현재 세계금융의 중심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금융과세제도 설계 시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했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난 10년간 금융소득과세일체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해 점진적이지만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해 온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금융소득의 정의와 전반적인 금융상품의 특징과 과세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인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방법 및 체계를 살펴보고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보험의 과세방법 및 체계에 대해 정리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며 5장에서는 연금과세체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슈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